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 제2015-56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제2015-5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 공 고
  - 제2015-515호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 ..... 4
  - 제2015-516호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 ..... 6
  - 제2015-520호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8
  - 제2015-5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제2015-523호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1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 - 56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6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70-2외 2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6	2010.04.19.	조선시대 유학자 이항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14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71-24	2010.06.28.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등·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 - 57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1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1	2015. 07. 29.	건물멸실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209-1	2015. 07. 29.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15호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

- 1.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간 내의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2.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2015. 7.29 ~ 8.12)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디자인과(☎02-3396-5984)
-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 (2) 위치 및 규모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구간 150개점포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4)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2월까지
-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 (6) 사 업 비 : 375,000천원(구비)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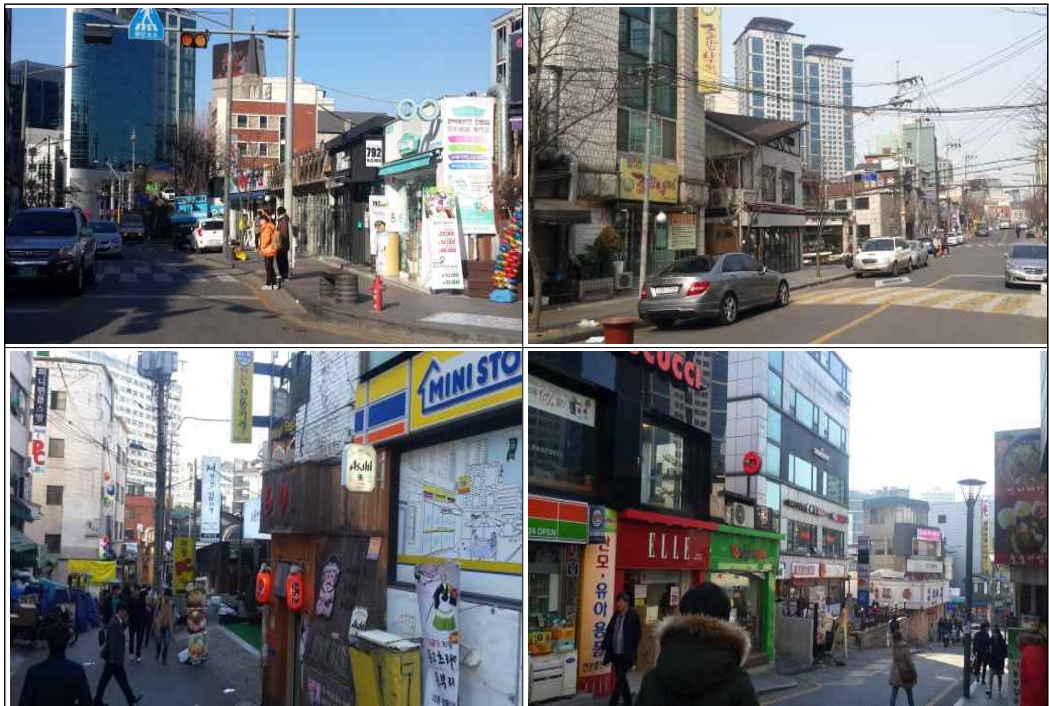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문건과 같음)

붙임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현장사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16호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

1.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간 내의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2015. 7.29 ~ 8.12)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디자인과(☎02-3396-5984)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 (2) 위치 및 규모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구간 104개점포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4)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2월까지
-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 (6) 사업비 : 260,000천원(시비 130,000천원, 구비130,000천원)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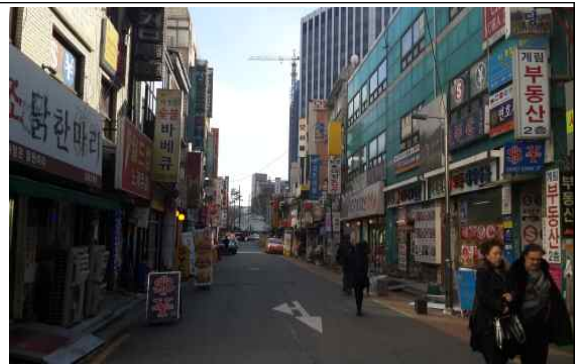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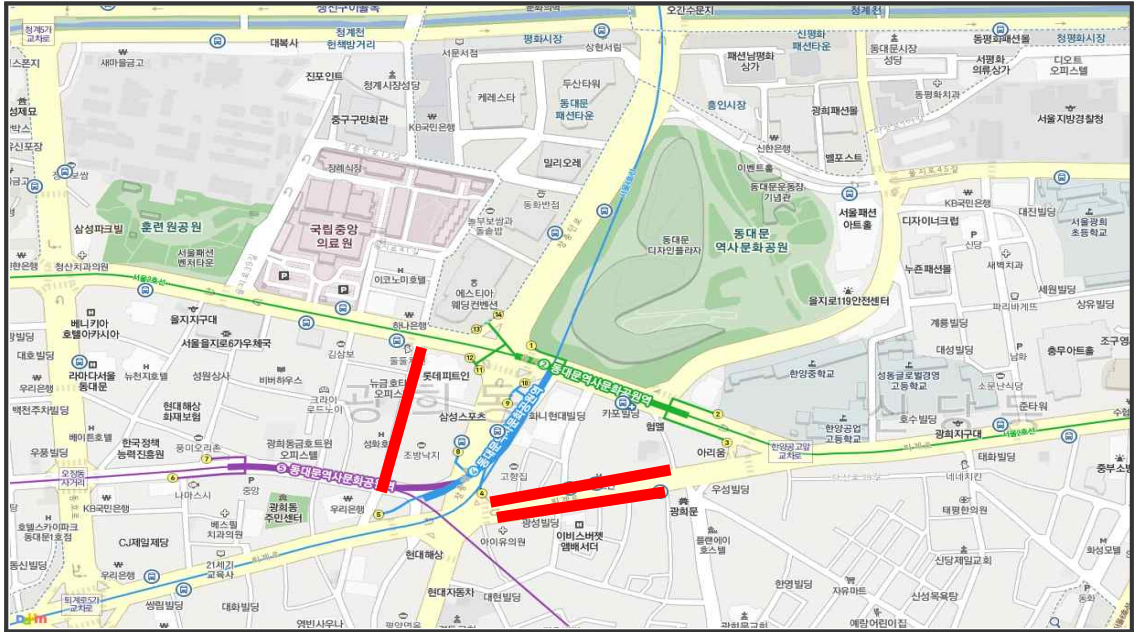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문건과 같음)

붙임 :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15-520호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고,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 다. 사업의 규모 : 13,827.50㎡(획지 8,433.37㎡, 정비기반시설 5,394.13㎡)
- 라. 사업시행자 : (주)피티에스지피에프브이 대표 조항춘
- 마.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 4,917.50㎡, 2) 연면적 : 125,368.20㎡, 3) 층수 : 지하8층/지상28층(124.69m)
  - 4)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2. 공람개요

- 가.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20일(공휴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회현동, 소공동 주민센터
- 다. 공람내용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라. 의견제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에 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 2015년 8월 10일 (월) 14:00



나. 장 소 : 회현동주민센터 3층

다. 대 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21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

### 2.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지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4항)
  -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되거나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시장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3396-5062, FAX: 3396-8679, 메일: mo8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산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을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제5항의 조문을 개정 전의 같은 조 제4항의 조문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의 조문을 개정 전의 같은 조 제5항의 조문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로 한다.

제8조의 7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개정 전의 제6항의 조문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을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조문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 할 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p> <p>① ~ ③ (생 략)</p> <p>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u>협의회</u>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li> <li>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li> <li>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li> <li>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li> <li>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u>협의회</u>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li> </ol> <p>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u>협의회</u>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p>	<p>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p>

현행	개정안
<p>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산업보존 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⑦ &lt; 신설 &gt;</p>	<p>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li> <li>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li> <li>3.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li> <li>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9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li> <li>2호 ~ 3호 (생략)</li> </ol>	<p>제9조(-----지정·변경·지정취소-----)</p> <p>- ----지정·변경·지정취소----- -</p> <p>1. 지정·변경·지정취소-----</p> <p>2호 ~ 3호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 523호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2015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15. 7.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및 이전설치
2. 설치목적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우리 구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로 교통소통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7.29.(수) ~ 2015. 8.19.(수) [22일간]
4. 설치위치 : 신규 및 이전설치 8개소 [붙임 2]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
  - 제출기간 : 2015. 7.29. ~ 2015. 8.19.
  - 제출대상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제출내용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의견제출서는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고시/공고 항목에서 다운로드가능
    -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 중구청 주차관리과에 서면 및 Fax(3396-8869)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주차관리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번호 : 02-3396-61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2015년 불법주·정차 CCTV 설치장소

□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 8개소 [참고자료 1]

연 번	관할 경찰서	해당동	주 소	비 고
1	남대문	소공동	북창동 18-9(북창동 중앙로) [남대문로1길 42]	신규
2	남대문	회현동	회현동2가 88-3 (회현롯데캐슬옆공영주차장 옆) [소공로 7길 2]	신규
3	중부	필 동	필동1가 51-5(구 매일경제 맞은편) [충무로 2]	신규
4	중부	필 동	충무로3가 60-1(남산스퀘어빌딩) [퇴계로 173]	이전
5	중부	광희동	광희동 2가 17 (케이와이 헤리티지호텔) [장충단로 226]	이전
6	중부	다산동	신당동 363-1 (신성부동산) [동호로 11길 40]	신규
7	중부	약수동	신당동 372-31 (신동호 빌딩) [동호로 163]	신규
8	중부	청구동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단지내상가) [동호로10길 30]	신규

□ CCTV 이전지역 : 2개소 [참고 2]

연번	관 할 경 찰 서	해당동	주 소	비 고
1	중부	필 동	충무로3가 59-23(영한빌 딩) [수표로 12]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으로 이전
2	중부	광희동	을지로7가 134-2(라모도 쇼핑몰 앞) [장충단로 23 0]	광희동2가 17 (케이와이헤리티지호텔)로 이전

참고자료 1

1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1. 북창동 18-9 북창동 중앙로

- 북창동 중앙로 - 1



- 북창동 중앙로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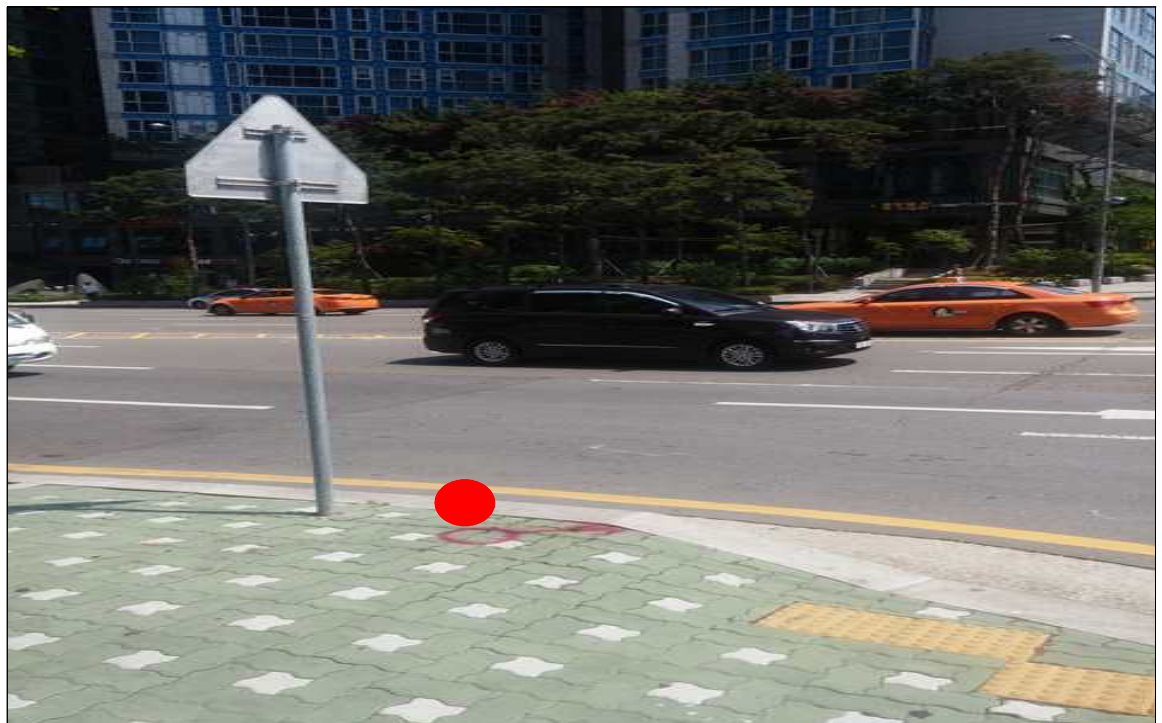


2. 회현동 2가 88-3 「회현롯데캐슬옆공영주차장」 옆

○ 회현롯데캐슬옆공영주차장 옆 - 1



○ 회현롯데캐슬옆공영주차장 옆 - 2



### 3. 필동 1가 51-5 구 매일경제 맞은편

○ 구 매일경제 - 1



○ 구 매일경제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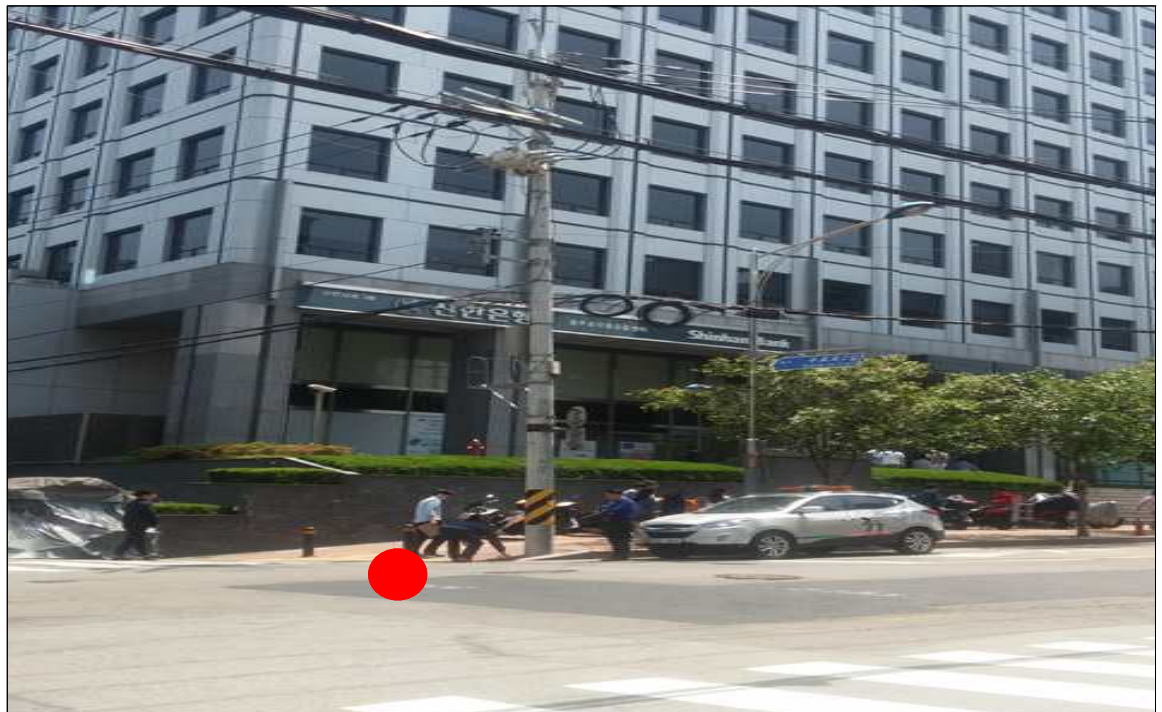


#### 4.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

##### ○ 남산스퀘어빌딩 - 1



##### ○ 남산스퀘어빌딩 - 2



### 5. 광희동2가 17 케이와이 헤리티지 호텔

#### ○ 케이와이 헤리티지 호텔 - 1



#### ○ 케이와이 헤리티지 호텔 - 2





### 6. 신당동 363-1 신성부동산

○ 신성부동산 - 1



○ 신성부동산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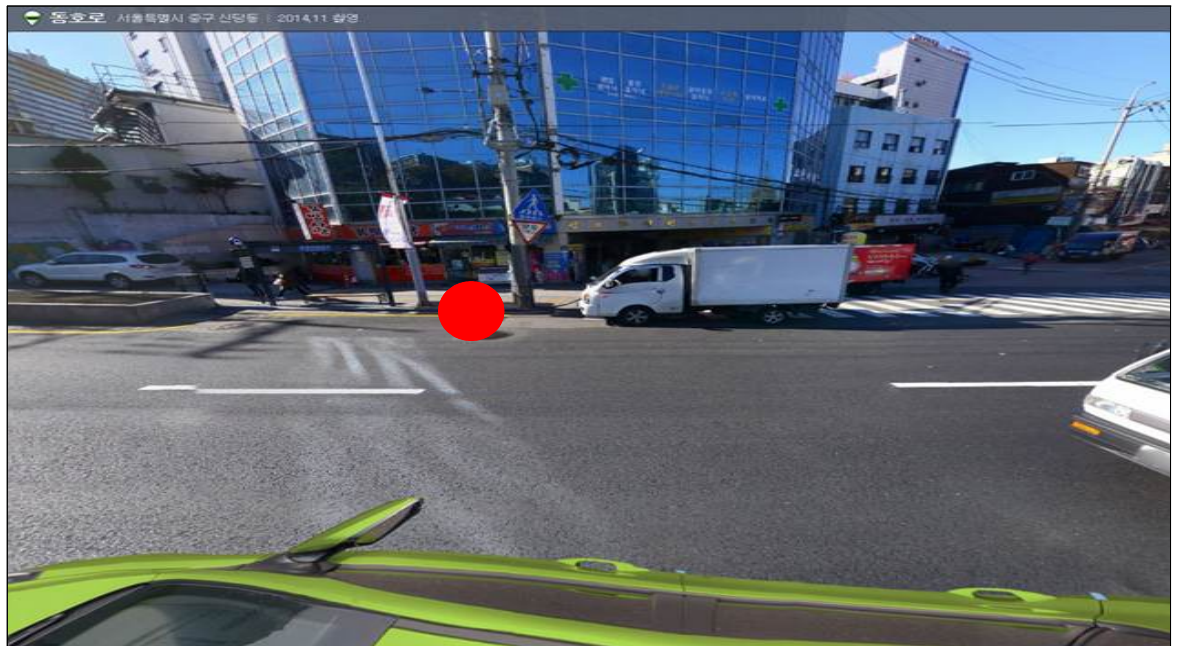


### 7. 신당동 372-31 신동호빌딩

○ 신동호빌딩 - 1



○ 신동호빌딩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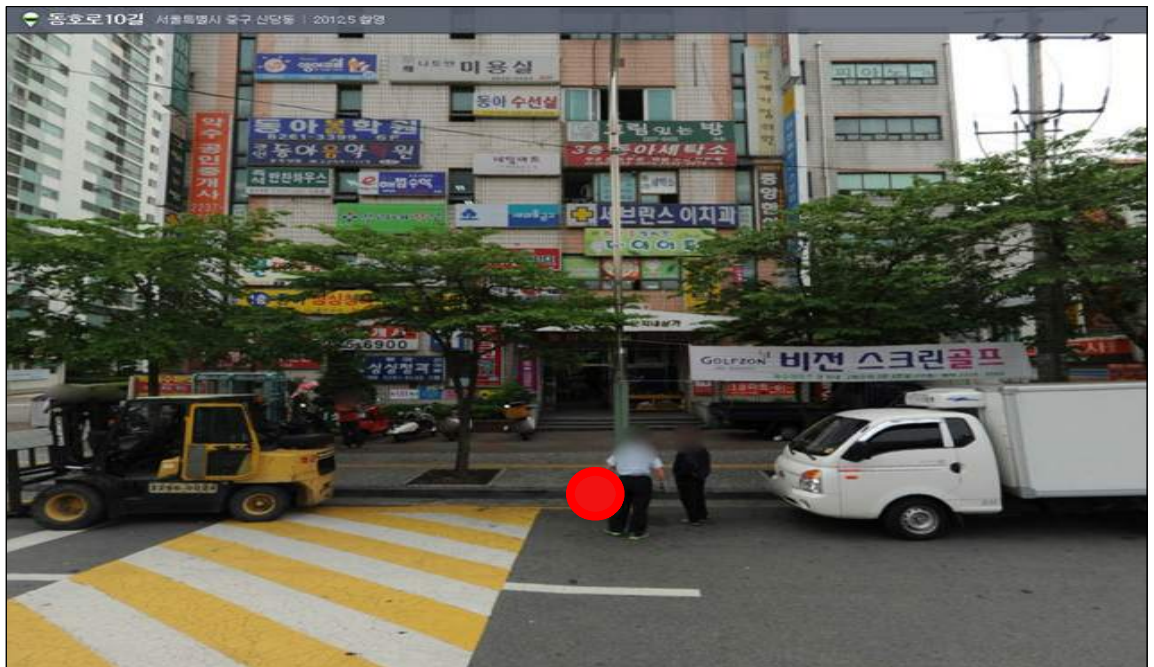


### 8. 신당동 842번지 약수하이츠단지내상가

○ 약수하이츠단지내상가 - 1



○ 약수하이츠단지내상가 - 2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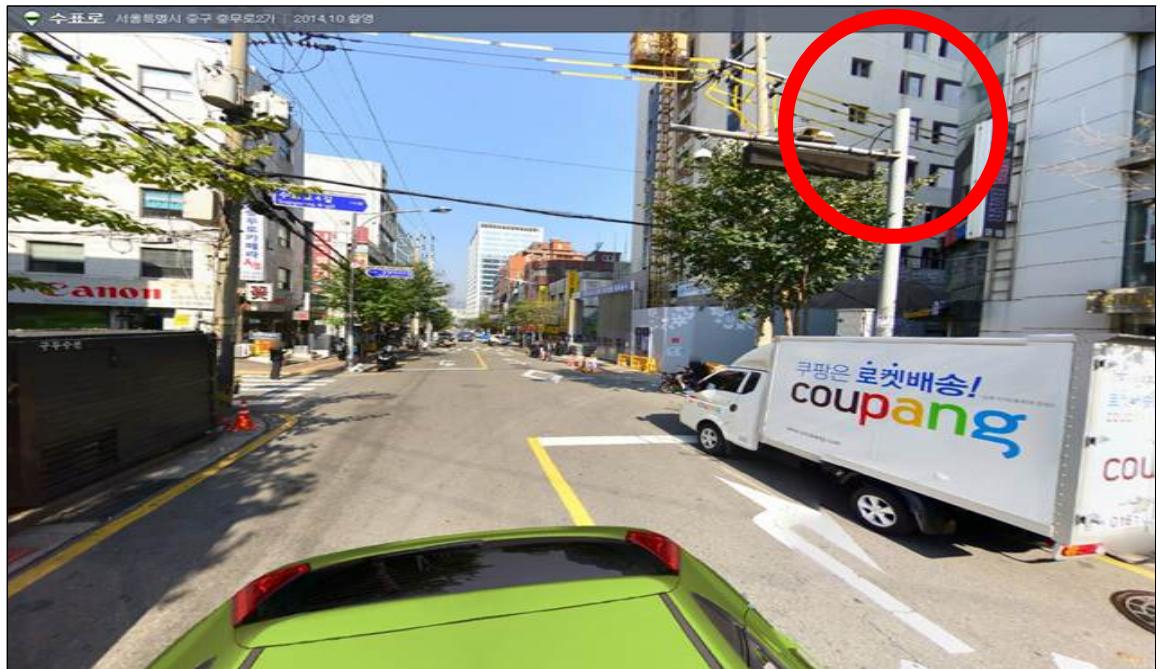
2 CCTV 이전대상지역 위치

1. 충무로3가 59-23 영한빌딩

○ 영한빌딩 - 1



○ 영한빌딩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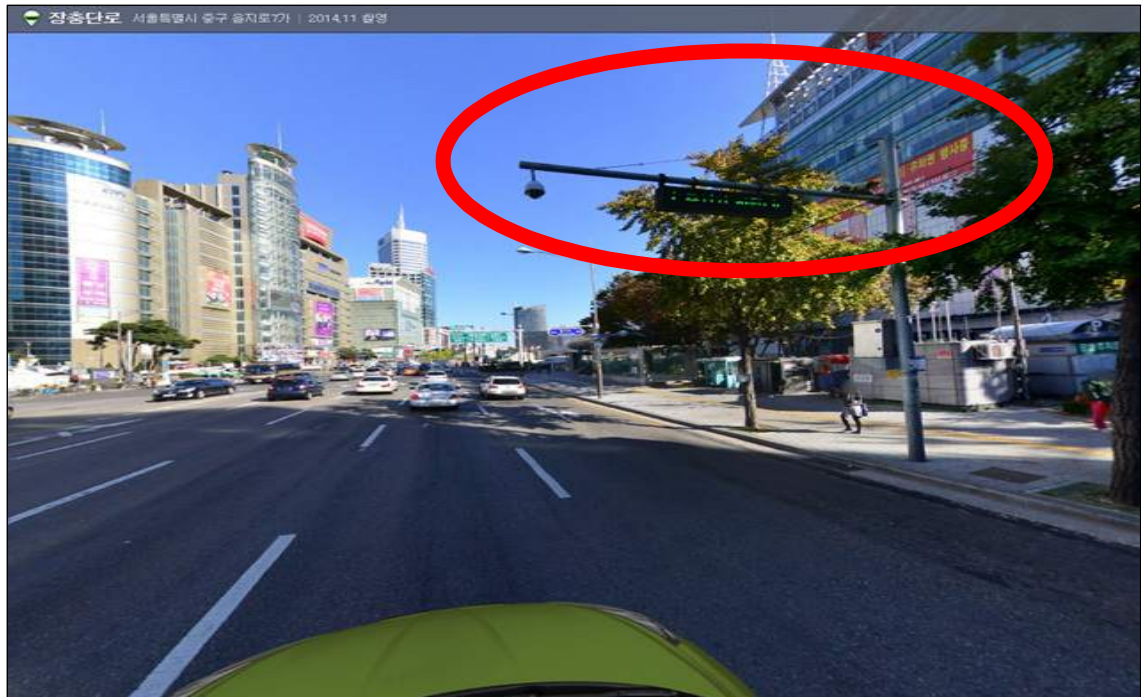


2. 을지로 7가 134-2 라모도쇼핑몰 앞

○ 라모도 쇼핑몰 앞 - 1



○ 라모도 쇼핑몰 앞 - 2



별첨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2015년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및 이전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귀하			